

메커니즘 경영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메커니즘 경영학회는 연구자의 학자적 양심과 연구도덕성을 유지하고, 학문적 객관성과 독창성을 확보하며, 연구의 중립성과 연구 성과의 사회적 공헌을 실현하기 위하여 <메커니즘 경영연구 윤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2조 (범위 및 중요성) 연구 윤리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의 착상 및 개시로부터 종료 및 출판, 홍보 등 일체의 연구 과정 중에 있어 지켜야 할 도덕적·윤리적 책무를 말한다. 연구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최소한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 또는 표절 등의 거짓과 속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인간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일 경우 그 연구대상을 존중하고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은 바로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이자도리이다.1)

제3조 (연구윤리 준수 의무) 학회회원 및 학회활동 참가자는 본 규정에 제시된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응당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4조 (연구윤리에 대한 홍보) 학회는 연구윤리 규정을 학회회원 및 학회활동 참가자에게 널리 홍보하며, 신입회원이 학회 가입시 이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한다.

제2장 연구 윤리의 내용

제5조 (용어)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자가 속임수, 자기기만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 자신은 물론 그가 속한 연구공동체와 국가 사회에 심각한 해로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흔히 FFP 라고 불리는 위조(날조, 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한다.2)

제6조 (표절금지) 1. 표절이란 타인의 독창적인 연구 착상이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마치 연구자 자신의 것인 듯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표절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결과 중 일부를 인용함에 있어 반드시 인용 표시 및 주석 등을 통해 이를 명시하거나 자신만의 표현으로 바꾸어 기술해야 한다.

3.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중국과 중국학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만일, 최종 결정에 관한 의견에 다툼이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권위자 3인 이상을 선임하여판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중복게재) 1. 중복게재란 연구자가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 성과와 동일하거나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의 학위 논문을 축약 또는 정리하여 학술지에 투고, 게재할 수 있으나학위논문의 일부임을 명시해야 한다.

3. 연구자가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 논문을 다시 단행본에 수록할 경우는 중복 게재로 보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 연구 결과가 이미 논문의 형태로 출판된적이 있음을 밝힐 것을 권장한다.

4. 연구자가 외국문으로 먼저 출판한 연구 결과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 해당 연구 결과의 번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연구자가 국문으로 먼저 출판한 연구 결과를 외국문으로 번역하여 국외에서 출판하는 경우는 해당 연구 결과를 널리 소개하고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중복게재로 보지 아니 한다.

6. 연구자가 초고 형태의 연구물을 전문 학술지가 아닌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잡지, 보고서 등에 발표한 다음 연구결과를 수정·보완하여 투고, 게재할 경우, 해당 자료를 '수정, 보완하였다는'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7.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 결과를 출판함에 있어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 결과 중 일부를 인용하거나 자신의 기존 연구 결과를 기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공정한 업적표기) 1.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연구 결과의 도출에 기여한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2. 연구자는 연구 결과의 도출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임의로 표기하거나 다른 연구자에게 이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 결과에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구 수행 및 연구결과 도출에 있어 기여가 클수록 해당 연구자의 성명을 앞에 배열한다. 기여의 정도가 동일할 경우에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배열한다.

4.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함에 있어 책임연구자는 해당 연구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9조 (인용 및 참고 표시) 저자는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각주, 미주 등에 표기한다. 공개하지 않은 자료의 경우는 그 자료 원작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용이 가능하다. 또한 타인의 아이디어를 참고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밝힌다. 이러한 표기를 통하여 연구내용 중 선행연구 부분과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부분을 독자들이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논문게재 및 저작권위임 동의)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이 게재 확정된 경우, 저자는 '논문게재 및 저작권위임 동의서'에 서명한다. 이를 통하여 저자는 윤리규정을 준수

하였고, 저작권을 학회에 위임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제3장 편집위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제11조 (공정한 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서 공정하게 선정한다. 즉, 저자 또는 편집위원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논문의 내용에 근거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12조 (비밀유지)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편집이사는 학술지를 출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중 특정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할만한 내용을 직무와 무관한 인사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심사위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제13조 (신속한 심사) 학술지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신속하게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제14조 (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한다. 또한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결과를 제시하거나,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논문을 탈락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제15조 (예의 및 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을 제시하는데 있어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삼가하고, 가능한 한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심사 대상 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심사내용을 논의하지 않고, 심사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을 지킨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제16조 (설치) 연구기관 자체검증의 원칙에 의해 중국연구센터 산하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7조 (역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에서 규정한 일체의 연구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사, 심의, 징계 의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연구윤리매뉴얼(2014: 48~82)의 내용을 따른다.

제18조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메커니즘 경영학회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메커니즘 경영연구 편집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편집위원 전원을 위원으로 선임한다.

제19조 (성격) 연구윤리위원회의 일체 활동은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인사나 기구로부터도 독립성을 갖는다. 연구윤리위원회가 조사, 심의 중인 사안과 무관한 어떠한 개인이나 기구도 연구윤리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발언이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대리)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부위원장인 편집위원장이 연구윤리위원회장을 대리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제21조 (의결)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 출석,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제22조 (소집)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23조 (대상)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심의의 대상은 연구 윤리의 확립 및 실천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를 포괄한다.

1.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실명의 구두 또는 문서 형태의 제보.
2.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익명의 제보라도 상당히 구체성을 갖는 경우.
3.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자체 인지.

제24조 (조사기간)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조사결과 및 부정행위여부의 판정을 제시한다. 단, 조사기간 중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회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회장의 승인을 얻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 (조사결과 및 판정)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또한 결과보고서 내에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을 '협의' 또는 '무혐의'로 제시한다. 회장은 조사결과를 신고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26조 (재조사) 신고자 또는 피조사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1. 조사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그내용을 관련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회장은 징계조치로서 논문제출 자격 정지, 게재무효 등을 명할 수 있다. 2. 투고금지 및 자격정지의 경우 그 횟수 또는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게재철회의 경우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전자적으로 출판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한다.

제28조 (기록) 연구윤리위원회는 일체의 조사, 심의, 의결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여 남겨야 한다.

1. 문서의 보존 연한은 10년으로 한다.
2. 보존 연한이 경과한 문서에 대한 폐기 여부는 연구윤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9조 (소명) 연구윤리위원회는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인사를 출석시켜 그 소

명을 청취함으로써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 3회 이상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반론을 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사무국에서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한다. 조사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 공개될 수 있으나, 신고인, 증인, 참고인 등 조사 관련자의 정보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될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연구윤리규정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